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6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이성민(6574) 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 / 팀원 임은애(6560)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5381호

시행일자 2021. 7. 27.

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전문학회장),
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
참 조

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고시 제2019-86호) 집행정지 해제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-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6호, 2019.4.30.)
- 서울고등법원 제4-2행정부 판결(2021.6.23)
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719 (2021.7.22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[별표1]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7월 2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여 온 바,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: 단 해당 제약사가 7월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(결정일 미정)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될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다시 안내할 예정임

붙임 :
1. 복지부 공문 1부.
2. 집행정지해제_목록(제2019-86호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